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

2021. 1.

문화체육관광부

Ⅰ. 추진 배경

○ 야영장이 지속 확대됨*에 따라 **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**을 통한 관련 산업의 **지속적인 발전 도모** 추진 필요

* 등록야영장수: ('17)1,927개 → ('18)2,214개 → ('19)약 2,356개 → ('20)약 2,500개

○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('19.3.4.)에 따른 야영장 안전·위생 기준 강화 및 유예기간 종료(~'21.3.3.)에 따라, 동 **제도 변경 사항의 원활한 현장 적용**을 위한 업계 지원 추진

Ⅱ. 지원 사업 개요

○ **(사업명 및 지원규모)**

사 업 명	전체규모(국비)	지원규모(국비)
① 야영장 안전·위생시설 개보수 지원	**13.5억 원**	· **(공공)**사업체당 최대 4천만원 · **(민간)**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
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	**10.88억 원**	· **(공공)**사업체당 최대 3천만원 · **(민간)**사업체당 최대 1.5천만원

○ **(추진일정)** ①기초지자체 공고 및 접수*(~'21.2.11.), ②광역지자체 심사 후 문체부 요청(~2.18.), ③지원대상 확정(~2월), ④보조금 교부(3월~)

* 지역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모에 참가가 불가할 수 있는 바,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(지원대상)** 관광진흥법에 따른 **등록야영장**(지원신청일 기준)

* 단, 세부 지원기준은 사업별 세부 내용 참조

○ **(지원조건)** 국비, 지방비, 자부담 매칭 (4:3:3)

○ **(신청방법)** **관할 지자체 관광과로 신청** (신청양식 지자체 문의)

Ⅲ. 사업별 지원내용

1 야영장 안전·위생시설 개보수 지원

○ **(지원대상)** 관광진흥법에 따른 **등록야영장**(지원신청일 기준)

<지원 대상 선정 기준>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
- 최근 3년간('18~'20)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*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*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**우선 고려**
- 지방비·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(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)
- 안전·위생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

③ 기타사항
- 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
-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(산출근거, 견적서 등 검토)

○ **(지원규모)** 총 13.5억 원(국비)

구 분	국비 지원규모	매칭 비율
공공야영장	개소 당 최대 4천만원	국비 40%, 지방비 60%
민간야영장	개소 당 최대 2천만원	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
* 국비지원액은 백만원 단위로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(지원내용)** 야영장 안전·위생시설 개보수

- **(안전시설)** 전기·가스시설, 경보기, 재해방지시설, 조명시설, CCTV, 긴급방송시설, 대피소, 비상용발전기, 안전·안내 게시물, 낙석·붕괴 방지시설, 잔불처리 시설 등
- **(위생시설)** 급수·배수시설, 상·하수도 시설,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

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

1 화재안전 시설 지원

○ **(지원대상)** 관광진흥법에 따른 **등록야영장**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(지원신청일 기준)

<지원 대상 선정 기준>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
- '19~'20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*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*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**우선 고려**
- 지방비·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(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)
- 화재안전 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

③ 기타사항
- 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
-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(산출근거, 견적서 등 검토)

○ **(지원규모)** 총 10억 원(국비)

구 분	국비 지원규모	매칭 비율
공공야영장	개소 당 최대 3천만원	국비 40%, 지방비 60%
민간야영장	개소 당 최대 1.5천만원	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
* 국비지원액은 백만원 단위로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(지원내용)**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

- **일산화탄소 경보기**,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, 소화기 및 보관함, 글램핑 시설의 **방염천막 교체**,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(3미터 이상) 확보를 위한 **이전설치 등**

○ **(관련 규제사항)** 기존 사업자의 경우 '21.3.3.까지 아래 기준을 충족

- 야영용시설(글램핑)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

법령	내용	경과조치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·위생기준 제1호마목	마.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(제1호라목1)의 시설을 말한다)의 천막 등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**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,**	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.3.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

* '**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**'이란 「방염성능기준(소방청고시)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, 이는 **①연소시험(세탁전후), ②연기밀도시험**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뜻함

-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

법령	내용	경과조치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(별표7 야영장 안전·위생기준 제1호바목	바.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(제1호라목1) 및 2)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사목에서 같다)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**3미터 이상의 거리**를 두어야 한다.	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.3.3까지 적합하도록 해야 함

* 거리 측정의 기준은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(글램핑의 천막,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시설(화장실, 샤워시설, 편의시설 등),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)

○ **(추가 안내사항)** 모든 소방시설(일산화탄소경보기, 소화기 등)은 반드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**제품검사를 받은 제품**을 사용해야 함*

* '야영장의 안전·위생기준' 1. 화재예방기준 가목

- 소방시설 신청 시, 해당 제품 생산업체 문의 후 개보수 내역 및 물량 작성 필요

2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

○ **(지원목적)**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

○ **(지원대상)** 관광진흥법에 따른 **등록야영장**(지원신청일 기준)

* 기본시설로 야영덱 및 사이트를 운영 중인 모든 야영장

* '19, '20년도 '화재안전성 확보지원' 선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

<지원 대상 선정 기준>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

- '20년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*선정 후 포기 사업체도 해당
-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야영장 *불완전 보험 또는 불완전 공제 가입 사업체도 해당

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 **우선 고려**

- 지방비·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이 확실한 야영장(자부담 확약서 등 확인)
- '21년 상반기 중 체계 구축 완료 예정인 사업체

③ 기타사항

- 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
- 소요액이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

○ **(지원규모)** 총 0.88억 원(국비), 40개소 내외

구 분	국비 지원규모	매칭 비율
공공야영장	개소 당 최대 2백만원	국비 40%, 지방비 60%
민간야영장	개소 당 최대 2백만원	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
○ **(지원내용)**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**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**

※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

▪ 분실,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**사이트수의 2~3배 수량 확보**

▪ **일산화탄소 경보기**는 **반드시**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**제품검사를 받은 제품 사용**

▪ 일산화탄소 경보기 **대여 운영 방법**은 사업체별 자율적* 구성하되, 활성화를 위해 **무료로 운영**

* 예) 무상 대여반납, 보증금 또는 신분증 거치 후 대여 등